

의안번호	2212152
의 퇴 인	권칠승의원
회 답 일	2025.09.10.
추계번호	25C4378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4조의2 (비대면진료)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내용에 비대면진료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진료에 관한 교육과정을 포함하여야 함(제10항)	의무규정
2	안 제34조의3 (비대면진료시스템)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3	안 제34조의4 (인공지능 기술의 활용)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을 보건의료분야에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의료인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4조의2 (비대면진료)	○ 현재 보수교육은 의료인 중앙회가 실시하고 있으며, 보수교육의 과정과 실시 방법 등도 각 의료인 중앙회장이 정하고 있음(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22조, 「간호법 시행규칙」 제14조. 각 중앙회는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를 고려하여 교육대상에게 보수교육비를 부과하고 있으며, 별도의 국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교육 범위 확대는 재정수반요인에 해당되지 않음
2	안 제34조의3 (비대면진료시스템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34조의4 (인공지능 기술의 활용)	○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“인공지능 기술 활용 가이드라인”은 자체 제작이 가능하여 재정수반요인에서 제외됨. 실제로 2023년 12월에도 “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”을 작성 및 배포한 사례에서도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음

2. 상세 사유

□ 비대면 진료시스템(안 제34조의3)

-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시스템 지원의 명문화에 따른 사업 확대 여부 및 규모를 현시점에 가정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미 “비대면 진료기술개발(R&D)” 사업(2025년 기준 74억원), “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실증” 사업(2025년 기준 45억원)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진료 시스템 활용을 지원하고 있음
 - 개정안은 구체적인 비대면진료시스템 지원 방법과 규모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가정하기 어려움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